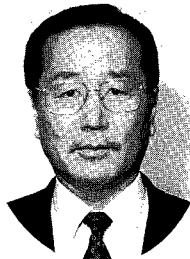


축산업계

소식

농촌진흥청

축기연소장에 정선부씨 승진 임명



◇ 정선부 소장

농촌진흥청(청장 김동태)은 7월 1일부로 축산기술연구소 소장에 전 종축개량부장인 정선부씨를 승진 임명하였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정선부소장은 축산시험장에서 주로 연구활동에 전념하여 오다가 제주시험장을 거쳐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개방화 시대에 한국축산업의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부의 전문인 등용방침에 따라 그간의 업적이 높이 평가되어 전문기술인으로서는 드물게 축산기술연구소 소장

에 임명되어 축산업의 근간인 연구활동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부

공동방역사업단 본격 가동

농림부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성된 공동방역사업실시단이 지난 달부터 본격가동 되었다.

'97 공동방역 사업단 지원대상

구 분	사업단명	사업주체
경 기	이천 양계 방역 사업단	양계협회
충 북	충주 양계 방역 사업단	양계축협
	진천 양계 방역 사업단	체리브로
충 남	천안 양계 방역 사업단	양계축협
	홍성 공동 방역 사업단	홍성축협
전 북	김제 양계 방역 사업단	양계축협
	익산 양계 방역 사업단	하 림
	군산 양계 방역 사업단	동 우
경 북	칠곡 양계 방역 사업단	양계축협
	계	9

'97 공동방역사업실시단 운영을 신청한 68개소 중 36개소를(양계 9개소, 돼지 26개소, 소 1개소) 1차로 선정하고 개소당 4천2백35만원씩 모두 15억2천4백60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예방약剤, 방역차량, 소독장비 등을 지원하여 늦어도 이번달말까지 해당 장비를 구입 완료토록 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2차 선정일시를 오는 8월경으로 하고 14개소의 공동방역사업 실시단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는등 올해 총 50개의 공동방역사업 실시단을 운영키로 하는 한편 '98년이후 200개

• 축산업계 소식

의 공동방역사업실시단을 추가하여 총 250개의 공동방역사업실시단을 운영하여 기축전염병을 근절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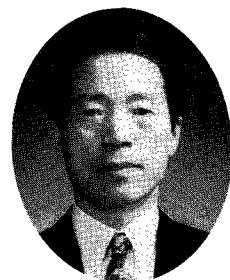
이와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유용 또는 전용하거나 장비를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축협중앙회

신임 경제. 신용부회장 임명



◇ 원광식 부회장



◇ 장정환 부회장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는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경제, 신용부회장에 대한 임명안을 각각 승인하였다.

경제부회장에 임명된 원광식씨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신용부회장 장정환씨는 동화파이낸스(주)의 경영고문을 담당하였다.

축협 민선3기 부회장으로 임명된 이들 2명의 임기는 각각 4년이다.

대구경북양계축협

만촌지소 개점



대구경북양계축협(조합장 류종래)은 5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에 만촌지소를 개점하였다.

만촌지소는 양축자금지원을 위한 도시 유휴 자금의 유치와 지역주민의 가계자금지원 및 편익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북양계농가들의 자금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성란 출시



동협은 신선하고 가격이 저렴한 '정성란'을 출시하였다.

양계농가와 판매처를 연결하는 완벽한 유통 체계와 축협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가금학회

'97 심포지움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정선부)는 지난 25일 한국 종합전시관(KOEX) 국제회의실에서 '환경친화적 첨단 양계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97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97양계박람회 기간 중에 개최되어 양계시책, 계분의 자원화 방법, 최근 핫 이슈인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 문제, 가금질병, 사료영양을 심포지엄 주제로 선정하여 참관자들에게 다양한 학술정보제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대한수의학회

수의과학회관 건립 본격화

대한수의학회는 5월 16일 수의과학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동월 27일 기본설계도를 검토하여 설계자를 선정하였다.

이로서 그동안 난황을 겪어왔던 수의과학회관 건립 추진이 본격화 되었다.

건립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이다.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축산식품 일원화 정책토론회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회장 탁연빈)는 지난 13일 한국마사회 국제회의장에서 축산식품 일원화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최근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따른 국민 건강 보호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의 모든 책임을 담당하는 농림부와 최종 식품의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되어 있는 '축산 식품 관리 업무'가 과거 몇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농림부로 일원화 될 시점에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저지로 인하여 일원화 정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원화 추진현황과 방향에 대하여 농림부 관계자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의 장종근박사가 축산식품관리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축산식품관리에 대한 맹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밖에 생산, 가공, 학회, 언론, 소비자 단체의 인사들의 토론회가 있었다.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가축육종정책 심포지움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회장 박영일)는 지난 5일 아산온천호텔에서 축산관련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육종정책 심포지움이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동회의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장 시간에 걸쳐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1부 세미나에는 축산국 이관용국장의 "정부의 가축개량방향과 시책"과 GGP협의회 김성

• 축산업계 소식

훈 회장의 “육종산업계의 관점에서 본 정책”을 전문 종돈업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2부에서는 유병현 미원축산과학연구소 소장이 가금의 육종산업 정책, 이수현 과장(축산기술연구소)이 가축개량조직의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3부에서는 이문연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이 가축개량에 있어 품종협회 역할을 역설하고, 김내수 교수(충북대)는 대가축 육종정책의 발전 방향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회에서는 오봉국 교수를 좌장으로 모시고 이날 토의한 내용을 총 점검하는 자리 를 마련하였다.

단미사료협회

단미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청원

단미사료협회(회장 박석남)은 지난 10일 국회의장에게 단미사료 부가세 영세율이 오는 7월 1일 배합사료와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청원하였다.

동협회는 '96년 11월 제181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개최때에 부가세영세율 적용을 위한 조세감면 규제법을 배합사료가 아닌 사료관리법상의 “사료”로 해야 타당하다는 제의가 있었으며, 단미사료 관련업계의 부가세액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배합사료와 동시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의 양해하에 조세감면규제법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동협회는 지난 3월 단미사료(섬유질) 부가세액을 조사한 바 연간 납부총액이 20억원 수준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부가세영세율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합사료 구입 양축농가만 영세율 혜택을 받고 단미사료 구입 양축농가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청원하였다.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이사회 개최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회장 심상무)는 지난 19일 5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 안건은 임시총회 및 단합전진대회 결산보고, 조사료 생산기계 및 낙농육우 기자재 하자처리(안) 추진방향, '98한국국제축산박람회 준비위원 선정 및 약정서를 심의하였다.

기타안은 신규회원사 가입 승인의 결과 축산기자재 규칙(안)에 대한 검토 하였다.

신규채용

동회는 지난 19일부로 사무국에 김영선(전 하나은행 근무)씨를 채용하였다.

농림부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농림부는 지난 23일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및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농림부 고시제 1997-46호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하였다.

- 다음 -

구 분	공 종	규 格	단 위	단 가
축 사	계 사	산란계사	원/m ²	99,000
		육 계 사	원/m ²	99,000
가 축 입 식	육 계	병 아 리	원/마리	427
		중 추	원/마리	670
	산란계	병 아 리	"	553
		중 추	"	1,700

* 양계관련 내용을 빌체함.

〈주〉

- 본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중 가축은 피해당시 새끼 가축의 산지가격을 적용합니다.
- 가축의 육성가축 기준은 육계는 20일령 이상 또는 600g 이상, 산란계는 70일령 이상 또는 850g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증 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증 대통령령 제15,404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만,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 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법인.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는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9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조합법인

수산업 동조 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분에 한한다.

④축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또는 동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2.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 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서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부하는 확인서

제3조제1항중 “비료를”을 “비료(비료와 육묘용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며,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99조제4호(마목을 제외한다)”를 “법 제99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